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2019. 11. 7.(목) 14:00 ~ 17:00
LW컨벤션 그랜드볼룸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등록 번호

여성인권-자료집-2019-8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2019. 11. 7.(목) 14:00 ~ 17:00

LW컨벤션 그랜드볼룸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1 개요

- 일시 : 2019. 11. 7.(목) 14:00~17:00
- 장소 : LW컨벤션 그랜드볼룸
- 주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프로그램

14:00 ~ 14:20(20')	· 접수 및 등록 사회_유지선(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교육지원팀장)
14:20 ~ 14:30(10')	· 개회 및 인사말씀 박봉정숙(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좌장_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14:30 ~ 15:20(50')	1.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_한민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_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5:20 ~ 15:30(10')	· 휴식
주제발표 토론	
15:30 ~ 16:15(45')	1. 경찰의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_이은구(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 2.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_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3. 해외 스토킹 피해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의 미래과제 _윤선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
16:15 ~ 17:00(45')	종합토론 및 폐회

CONTENTS

01.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03

한민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0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25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03. 경찰의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35

이은구(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

04.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47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05. 해외 스토킹 피해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의 미래과제 ... 65

윤선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01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스트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01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 성폭력 범죄피해 전조로서의 스토킹

한민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2018년 개봉한 영화 ‘도어락’은 ‘내 집은 안전한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1인가구¹⁾의 일상을 포착하고 있다. 영화에서 30대 여성 1인가구인 경민은 직장에서 퇴근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내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도어락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경민은 불안한 마음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 누군가 도어락을 여는 것을 시도하다 ‘삐삐, 잘못 누르셨습니다’라는 경고 알림음을 듣는다. 경민은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 것 같라며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은 경민의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영화 ‘도어락’은 여성 1인가구가 가진 낮은 사람으로부터의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소재로 설정한 허구적 상상력의 산물이었지만,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²⁾ 사건은 영화 ‘도어락’에서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 1) 연구에 따라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지만,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는 통계청의 정의를 대체로 따르며, 이 연구 역시 통계청의 정의에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1인가구는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이혼 전 단계로 별거를 선택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경우, 소위 ‘기러기 가족’·주말부부 등 가족구성원과 별거로 혼자 사는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 2) 경찰 및 검찰은 이 사건을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으나 지난 10월 16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간에 대해서는 실행에 착수했다는 직접적·간접적 증거가 없으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널리 칭해지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언급하기로 한다.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이 닫혀 들어가는 데 실패하자 문 앞 복도를 배회하고 도어락을 조명으로 비춰보는 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여성 1인가구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여성 1인가구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건은 비단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2017년에는 창문으로 여성의 자취방을 10여 분간 몰래 들여다보고 안쪽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의 사진이 SNS상에 올라오자 유사한 경험을 토로하는 여성 1인가구들의 댓글이 이어졌고,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인 9월 12일에는 신림동에서 또 다른 남성이 다세대주택 내 원룸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주택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마중 나온 남자친구와 마주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들은 성폭력 범죄를 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해자가 피해 여성들의 움직임에 상당 시간 추적 또는 관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성폭력 범죄 미수로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안된 법률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³⁾ 몇 년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게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⁴⁾

- 3) 최초로 발의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에서 1999년 5월 24일 제안된 ‘스토킹처벌에 관한특례법안(김병태의원 등 13인 외 21인)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2000년 5월 29일 임기만으로 자동폐기 되었다. 이후에도 [제16대 국회] 스토킹방지법안(이강래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162733, 제안일자 2003년 10월 13일), [제17대 국회]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의원 등 25인, 의안번호 172815, 제안일자 2005년 9월 27일), [제18대 국회]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재균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803469, 제안일자 2009년 1월 9일), [제19대 국회]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01321, 제안일자 2012년 8월 27일), 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05532, 제안일자 2013년 6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1913972, 제안일자 2015년 2월 13일) 등이 꾸준히 제안되었으나 (제안을 철회한 제17대 국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 되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총 6건으로, 다음과 같다(제안일자순):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000102, 제안일자 2016년 6월 3일) 2)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김정훈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02063, 제안일자 2016년 9월 2일)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2002537, 제안일자 2016년 9월 30일) 4)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의원 등 18인, 제안일자 2016년 10월 13일) 5)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2008108, 제안일자 2017년 2월 20일)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추혜선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8년 3월 14일);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19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 4) 동 조항은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최초 제안된 지 13년이 지난 2012년에야 경범죄처벌법상이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시 스토킹 관련 규정이 추가된 이유로 입법자는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중략)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원문, 의안번호 1814696, 제안일자 2012년 2월 27일).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제3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동 법 시행령의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서 스토킹에 대해서는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2,202건에 이르며, 2018년 한 해에만 544건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었다.⁵⁾ 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스토킹 범죄의 증가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건수는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2,722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644건에 달한다.⁶⁾ 1년간 총 5,416건, 하루 평균 14.8건에 이르는 스토킹 범죄가 신고되고 있지만, 이 중 처벌되는 것은 하루 평균 1.5건으로, 신고건수 10건 중 1건만이 처벌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고 단편적이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스토킹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경찰의 경우 2018년 6월부터야 스토킹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스토킹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자료의 부족은 지난 20여 년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지연되어 온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스토킹 피해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에 앞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이며,⁷⁾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다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피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실증연구 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년 주기로 수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⁸⁾는 2008년 기준 조사부터 ‘괴롭힘’을 범죄피해유형의 하나로 포함하여 측정해 왔다. 이 연구는 2012년 기준 조사부터 올해 수행된 2018년 기준 조사까지 4차분의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하는 ‘전조’(前兆)로서 스토킹 피해가 갖는 의미를 역설하고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5)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한 스토킹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300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5년간 여성 대상 범죄, 월평균 2,547건 발생... 스토킹 범죄 최다’, 시사매일, 2019년 9월 12일자 보도).

6) ‘한 해 5,000건 신고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7월 23일자 보도.

7) 한편, KBS 취재진이 여성을 피해자로 한 살인(미수 포함) 범행에 대해 2018년에 1심 선고된 판결문 15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8건(30.19%)에서 살인 사건 발생 전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었다(‘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KBS, 2019년 5월 23일 보도). 한국여성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 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전체의 22.4%(57건)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치켜보고 있다” 하루종일 괴롭혀도... 스토킹 범칙금 8만원, 매일경제, 2019년 5월 29일자 보도).

8) ‘1990년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로 최초 수행된 범죄피해조사는 1994년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으며, 표본규모 확대·조사항목 수정 등 조사방법이 전면 개편되었던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403001호)로 지정되어 2년마다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33-34).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19년 현재 제6차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조사시점 직전 연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수행된 조사결과를 곧 2018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를 의미한다. 현재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꾀하고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대외적인 조사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최수형 외, 2015: 11-12)로 변경한 바 있으나, 학계에서는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명칭인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동 조사를 전국범죄피해조사로 일컫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난 20여 년간 스토킹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어 온 데다 스토킹 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국내에 발표된 연구 중에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설문 조사 외에 스토킹 피해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2000년대를 전후하여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해 온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는 스토킹이 발생하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전개되어 왔다. 실태연구 결과가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제정된 법률은 다시 지속적인 실태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지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외의 스토킹 피해 관련 실증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특기할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스토킹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외 연구에서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서, 강간·폭력 등과 동등한 위상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Logan 등(2000: 91)은 스토킹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변형(variant) 내지 확대(extension)된,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이라고 주장한다.

1. 전미성폭력조사

스토킹 피해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국외의 대표적인 조사로는 먼저 전미성폭력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이하 NISVS)⁹⁾를 들 수 있다. NISVS는 크게 최근 1년(12개월) 동안과 평생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빈도를 조사한다. NISVS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유형을 크게 강간(rape)·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스토킹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한다. NISVS에서 정의하는 스토킹의 유형은 [표 1]과 같다(Smith et al., 2017: 85).

9) NISVS 조사는 질병예방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내 전미부상예방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임의전화걸기(RDD: random-digit-dial) 방식으로 이루어진 NISVS 조사에는 총 41,174명(여성 22,590명, 남성 18,584명)이 참여하였다.

표 1 전미성폭력조사(NISVS)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유형

- 원치 않는 전화음성·문자 메시지·전화 끊기(hang-up)
- 원치 않는 이메일, 쪽지, SNS 메시지
- 원치 않는 카드, 편지, 꽃 등 선물
- 지켜보거나 일정 거리를 쫓아오기, 도청장치·카메라·위치추적장치(GPS)를 활용한 엿담(spying)
-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원치 않는 시간에 접근하거나 나타나기
- 이상한 물건 또는 잠재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숨겨두기
- 피해자의 집 또는 차량에 잠입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잠입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기
- 피해자의 집 또는 차량 내 개인 소유 물건이나 소지품을 손괴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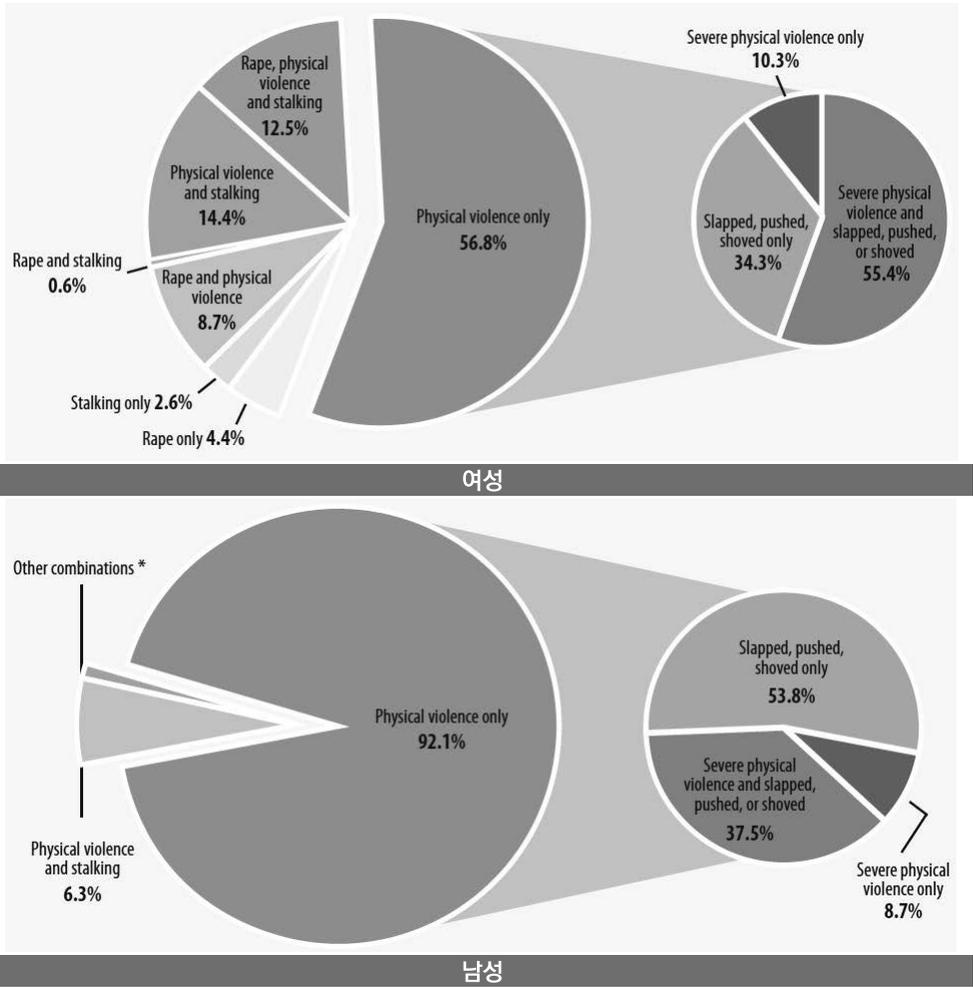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NISVS 조사결과를 종합한 Smith 등(2017: 85)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5.8%(인원수로는 19,093,000명)로, 여성 6명 중 1명꼴로 매우 빈번하게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15.8%)은 남성(5.3%)보다 3배가량 높았으며, 최근 1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 역시 남성(1.9%)보다 여성(4.2%)에서 높게 나타났다(Smith et al., 2017: 86-90).

2010년 수행된 NISVS¹⁰⁾ 결과를 분석한 Breiding 등(2014: 22)은 친밀한 관계에서 강간·신체적 폭력·스토킹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하나 이상의 범죄피해가 중첩(overlap)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피해자 중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비율은 14.4%, 강간·신체적 폭력·스토킹을 모두 경험한 경우도 12.5%로 파악 되었다(Breiding et al., 2014: 24). 강간이나 신체적 폭력 없이 스토킹 피해만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2.6%에 불과하였다. 한편, 남성 피해자 중에서는 스토킹 피해 없이 신체적 폭력만을 경험하는 경우가 92.1%로 압도적으로 많아 스토킹에 더해 강간이나 신체적 폭력의 피해가 중첩되는 여성 피해자와 차이를 보였다.¹¹⁾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스토킹 피해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reiding et al., 2014: 22).

10) 2010년의 경우 총 18,049명(여성 9,970명, 남성 8,07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1)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은 남성 피해자는 전체 남성 피해자 중 6.3%였으나 강간·신체적 폭력·스토킹을 모두 경험한 경우는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Breiding et al., 2014: 22).

그림 1 스토킹과 강간신체적 폭력 피해의 중첩: 2010년 전미성폭력조사(NISVS) 조사 결과



출처: Breiding et al.(2014: 24), [Figure 2 8] Overlap of Lifetime Intimate Partner Rape, Physical Violence, and Stalking among Women — NISVS 2010 및 [Figure 2 9] Overlap of Lifetime Intimate Partner Rape, Physical Violence, and Stalking among Men — NISVS 2010.

2. 전미범죄피해조사 부가조사

미국 내 스토킹 범죄가 미 전역에 걸쳐 빈발하고 있다는 점은 2006년 스토킹에 대한 전미범죄피해조사 부가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Supplemental Victimization Survey, 이하 NCVS-SVS)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¹²⁾ NCVS-SVS 결과에서 최근 1년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만18세 이상의 사람은 3,300,570명으로, 만18세 이상 인구 기준 스토킹 피해를 1.5%로 나타냈다(Catalano, 2012: 3). NCVS-SVS 결과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스토킹 피해 유형은 원치 않는 전화를 걸어오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66.7%; Catalano, 2012: 4). 스토킹 피해자 중 34%는 가해자가 자신을 미행한 적이 있으며, 32%는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나타난 적이 있고, 29%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기다리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Catalano, 2012: 4). 피해자의 46%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11%는 5년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Catalano(2012: 5)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교차하여 NCVS-SV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의 위험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8세에서 19세, 20세에서 24세가 스토킹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스토킹 피해 위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성이었다. 만18세 이상 여성 1,000명 중 20명꼴로, 남성은 1,000명 중 7명꼴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남성보다 스토킹 피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talano et al., 2019: 6). 성차가 스토킹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6년 NCVS-SVS 자료를 활용한 Englebrecht와 Reyns(2011)의 연구 및 Ménard와 Cox(2015)의 연구에서 스토킹 범죄피해에 대한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의하였다. 피해자의 혼인 상태 역시 스토킹 피해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18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미혼인 경우는 2.4%, 기혼인 경우는 0.8%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데 비해, 이혼하였거나 별거 중인 경우는 3.3%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NCVS-SVS 결과에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인 경우(9.0%)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69.9%)가 더 많았다(Catalano, 2012: 5). 전체 스토킹 피해자 중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이 가해자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8.1%

12) NCVS는 1967년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 의해서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자료 분석은 미 법무부 산하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수집은 경제부 산하 통계국(U.S. Census Bureau)이 담당하고 있다. NCVS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기준 151,055개 가구, 242,928명이 NCVS 조사에 참여하였다(<https://www.bjs.gov/index.cfm?ty=dcdetail&iid=245>, 2019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NCVS는 정례조사와 별도로 특정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부가조사(Supplemental Victimization Survey: SVS)를 실시하는데, 2006년에 스토킹 범죄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부가조사가 일회적으로 실시되었다. NCVS-SVS는 NISVS에서의 스토킹 정의(표 1 참조)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루머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공장소 또는 구전(by word of mouth)으로 유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스토킹 범죄피해를 측정하고 있다 (<https://www.bjs.gov/index.cfm?ty=tp&tid=973>, 2019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가해자가 전 배우자였던 비율은 7.8%, 전 남자/여자친구였던 비율은 12.2%였다.

이상의 NISVS(전미성폭력조사) 및 NCVS-SVS(전미범죄피해조사-부가조사) 결과는 스토킹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첫째, 스토킹 범죄피해는 전국적으로 인구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본조사를 통해 측정된 결과에서 스토킹 피해는 여성만이 경험하는 피해가 아니며, 적지 않은 수의 남성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둘째, 스토킹 범죄피해는 성별·혼인상태 등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보다 빈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스토킹 피해는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반복되며, 강간·신체적 폭력 등 다른 범죄피해와도 중첩되는 경우가 잦다. 스토킹 피해와 다른 범죄피해와의 중첩 정도가 매우 높아, 도리어 스토킹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스토킹 피해와 성폭력 범죄피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경찰검찰이 작성하는 공식 범죄통계가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hidden crimes)를 포착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로, 2008년 기준 제1차 조사부터 ‘괴롭힘’을 범죄피해유형의 하나로 포함하여 측정해 왔다. 강간·폭력·절도 등에 대한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례조사와는 분리된 부가조사의 형태로 2006년 단 한 차례 스토킹 피해 정도를 조사한 NCVS와는 달리,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스토킹 피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조사지침서에서 괴롭힘을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이에 더해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함”이라고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스토킹의 다른 표현으로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들이 더 넓은 범주의 사건들을 회상하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준거들과 응답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활동, 범죄 장소에 대한 준거들을 거듭 제시하는 방식으로 질문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그 사건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사건을 피해조사에서 응답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지시문을 추가하고 있다(김은경 외, 2009: 77-78). 이러한 고려 하에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피해를 질문하는 문항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와 같은 지시문으로 시작하며,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친구, 애인 또는 이웃’, ‘가족이나 친척’, ‘낯선 사람’ 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예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회상을 돕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림 2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스토킹 범죄피해 측정 문항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1)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시	2) 친구, 애인 또는 이웃
	3) 가족이나 친척
	4)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건 ② 없었다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1) 낯선 사람
시	2) 조금 아는 사람
	3)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건 ② 없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12년 기준 조사부터 확률비례추출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에 의해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내 가구를 추출하는 표본추출 방식

및 범죄유형 판별식을 동일하게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제3차(2012년), 제4차(2014년), 제5차(2016년), 제6차(2018년) 4개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료통합이 가능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는 2012년 기준 조사부터 올해 수행된 2018년 기준 조사까지 총 4차분의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¹³⁾ 제3차(2012년) 조사에는 6,300가구의 가구원 13,317명, 제4차(2014년) 조사에는 6,960가구의 가구원 14,976명, 제5차(2016년) 조사에는 6,100가구의 가구원 13,257명, 제6차(2018년) 조사에는 6,704가구의 13,13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이 연구의 통합자료는 총 26,064가구, 54,686명의 응답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 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성폭력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한 이산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하는 성폭력 범죄피해는 강간(미수 포함) 및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분석모형에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범죄피해 위험과 관련하여 고려되어 온 개인 수준의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성폭력 범죄피해 여부)와 독립변수(스토킹 피해 경험 여부)로 설정된 변수와 광역 시·도를 구분하는 변수 외에 분석모형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¹⁴⁾ 교육정도, 1인가구 여부, 가구소득, 거주형태, 주택 유형, 거주지역 특성의 총 9가지로, 크게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주택 특성, 거주지역 특성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인 연령(연령의 제곱값 포함¹⁵⁾)을 제외한 요인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의 적합도를 높이고 결과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수의) 이산형 변수(discrete variables)로 코딩되었다. 일례로,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관사, 사택 등)의 다섯 가지 범주 각각에 대해 변수화 되었다.¹⁶⁾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통계적 분석에는 Stata 14.0을 활용하였다.

13) 연도별 성폭력 범죄피해 사례수 및 스토킹 피해 사례수가 다소 적어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총 4차분의 자료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4) 당초 혼인상태 중 이혼 또는 사별 여부에 대해서도 변수로 고려하였으나 이 변수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multicollinearity), 즉 피해자의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사별에 해당하는 경우와 스토킹 피해 경험과의 상관 정도가 높아 최종 분석모형에서 제외되었다.

15)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은 일정 연령까지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 연령의 제곱값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16) 거주형태 중 자가 여부에 대한 변수는 참조(reference) 변수로 활용됨에 따라 최종 분석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표 2 변수정의

변수명		세부내용
[종속변수]		
성폭력 범죄피해(강간 및 강제추행, 미수 포함)		1: 성폭력 범죄피해 있음, 0: 없음
[독립변수]		
스토킹 피해 경험		1: 스톱킹 피해 경험 있음, 0: 없음
[통제변수]		
개인 특성	성별(여성)	1: 여성, 0: 남성
	연령/연령*연령	만 나이/연령의 제곱값
	혼인상태	1: 미혼, 0: 기혼/이혼/사별/별거
	교육정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대학교 재학 이상
가구 특성	1인가구	1: 1인가구, 0: 다인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 월 500만원 이상, 0: 월 500만원 미만
주택 특성	거주형태	자가(참조 변수)/ 전세/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무상
	주택 유형	아파트
거주지역 특성	수도권 거주	1: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 0: 비해당
	농촌 거주	1: 읍면부 거주, 0: 동부 거주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성폭력 범죄피해를 겪은 사람은 성폭력 범죄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다. [표 3]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응답한 54,686명을 성폭력 범죄피해 유무를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피해 있음'(61명)과 '성폭력 범죄피해 없음'(54,625명)의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스토킹 피해가 성폭력 범죄피해와 중첩되는 비율이 높다는 이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는 앞서 살펴본 미국의 NISVS 및 NCVS-SVS 분석결과와도 상통한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중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64%였던 데 비해, 성폭력 범죄피해가 없었던 응답자 중에서는 0.06%만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스토킹 피해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다.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중에서는 성폭력 범죄피해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고(95.08% vs. 52.85%), 평균 연령은 낮았다(34.10세 vs. 48.10세).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성폭력 범죄피해가 없는 경우보다 미혼인 경우가 많았고(55.74% vs. 22.86%), 고졸 이하 학력은 1.64%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중 1인가구의 비율은 성폭력 범죄피해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았으나(29.51% vs. 10.52%), 월 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 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성폭력 범죄피해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신체범죄피해가 없는 경우보다 낮고(50.82% vs. 70.64%)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은 높았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성폭력 범죄피해가 없는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중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은 13.11%로, 성폭력 범죄피해가 없는 경우(22.23%)보다 낮았다.

표 3 성폭력 범죄피해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기술통계 결과

구분		성폭력 범죄피해		t	
		없음 (n=54,625)	있음 (n=61)		
스토킹 피해 경험		0.06%	1.64%	-5.03***	
개인 특성	성별(여성)	52.85%	95.08%	-6.61***	
	연령	48.10세	34.10세	5.99***	
	혼인상태(미혼)	22.86%	55.74%	-6.11***	
	교육정도(고졸 이하)	20.20%	1.64%	3.61***	
가구 특성	1인가구(해당)	10.52%	29.51%	-4.83***	
	월 가구소득(500만원 이상)	22.33%	22.95%	-0.51	
주택 특성	거주형태	자가	70.64%	50.82%	3.40***
		전세	15.75%	18.03%	-0.49
		보증금 있는 월세	8.84%	21.31%	-3.43***
		보증금 없는 월세	3.09%	8.20%	-2.30*
		무상(관사, 사택 등)	1.68%	1.64%	0.03
	주택 유형	아파트(해당)	50.30%	44.26%	0.94
거주지역 특성	수도권 거주(해당)	28.04%	29.51%	-0.26	
	농촌 거주(없음)	22.23%	13.11%	1.71+	

비교:*** p<0.001, * p<0.05, + p<0.1

2.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 피해 경험, 그리고 개인·가구·주택·거주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광역 시·도가 어디인지에 따라 범죄피해 정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주하는 광역 시·도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내 상관관계(intragroup correlation)를 전제한 가운데 분산추정량(variance estimator)을 구할 수 있도록 군집(cluster)을 분석모형에 고려하였으며,¹⁷⁾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와의 영향을 보다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계수(coefficient; β)의 값을

17) 군집으로 고려한 광역 사도의 수는 2012년·2014년·2016년 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총 16개이며, 2018년 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됨에 따라 총 17개다.

승산비(OR, Odds Ratios: 기댓값 $\exp(\beta)$)와 함께 제시하였다.¹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¹⁹⁾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13.266배(= $\exp(2.585)$) 높아졌다.

스토킹 피해 경험 외에 성폭력 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개인 수준의 특성 중에서도 성별·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성폭력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22.011배 높았다. 일정 연령(약 5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령은 증가할수록 성폭력 범죄피해의 위험을 높여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피해의 위험은 1.135배 높아지나 일정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범죄피해의 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지 여부는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으나,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의 위험은 0.476배 낮았다. 1인가구 역시 성폭력 범죄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1인가구인 경우 다인가구인 경우에 비해 성폭력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4.651배 높아졌다.

[표 4]의 분석결과는 성폭력 범죄피해에의 위험요인이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상이함을 보여준다. 주택 특성 및 거주지역 특성 관련 일부 변수들은 앞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피해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기술통계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변수들이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는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례로, 1인가구의 범죄피해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강지현, 2017; 유진·한민경, 2018 등)에서 확인된 바 있는, 범죄피해로부터의 아파트의 보호력은 성폭력 범죄피해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통상 재산범죄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 성폭력 범죄피해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른 변수들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주택 특성이나 거주지역의 특성은 성폭력 범죄피해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

18) 오즈비, 대응위험도, 교차비 등으로도 불리는 승산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발생 간의 관련성을 배수(倍數)로 제시하며, 해석의 용이성으로 인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분석결과를 회귀계수보다 승산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승산비가 1보다 크면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1보다 작으면 독립변수의 증가에 따라 종속변수 발생 확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19)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함으로써 추정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선형 회귀분석모형에서와는 달리 모형의 적합 도를 측정(measures of fit)함에 있어 합의된 R^2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인 Stata에서 기본(default)으로 제공하는 pseudo- R^2 값을 제시하였다.

표 4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성폭력 범죄피해				
	coef.	(S. E.)	OR	(S. E.)	z
스토킹 피해 경험	2.585	(1.167)	13.266	(15.479)	2.22 *
개인 특성					
성별(여성)	3.092	(0.554)	22.011	(12.193)	5.58 ***
연령	0.127	(0.040)	1.135	(0.046)	3.15 **
연령(제곱값)	-0.002	(0.000)	0.998	(0.000)	-4.33 ***
혼인상태(미혼)	0.502	(0.440)	1.652	(0.727)	1.14
교육정도(고졸 이하)	-0.742	(0.295)	0.476	(0.141)	-2.51 *
가구 특성					
1인가구(해당)	1.537	(0.344)	4.651	(1.602)	4.46 ***
월 가구소득(500만원 이상)	0.113	(0.451)	1.120	(0.504)	0.25
주택 특성					
거주형태					
자가	(ref.)				
전세	-0.063	(0.318)	0.939	(0.299)	-0.20
보증금 있는 월세	0.335	(0.310)	1.399	(0.434)	1.08
보증금 없는 월세	0.254	(0.590)	1.289	(0.760)	0.43
무상(관사, 사택 등)	0.109	(1.071)	1.115	(1.194)	0.10
주택 유형					
아파트(해당)	-0.275	(0.271)	0.759	(0.206)	-1.02
거주지역 특성					
수도권 거주(해당)	-0.100	(0.225)	0.905	(0.204)	-0.44
농촌 거주(없음)	-0.100	(0.308)	0.905	(0.279)	-0.32
상수항	-13.614	(1.746)	-	-	-7.80 ***
N	54,686				
log pseudo-likelihood	-398.29507				
Wald chi ²	389.58				
pseudo R ²	0.1627				

비고: (S. E.)는 광역 사도를 군집(cluster)으로 고려한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의미함; *** p<0.001, * p<0.05

IV. 논의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2012년 기준 조사부터 올해 수행된 2018년 기준 조사까지 4차분의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스토킹 피해 경험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스토킹 피해가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3.266배, 여성인 경우 22.011배, 1인가구인 경우 4.651배 높아졌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 위험이 13.266배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성폭력 범죄피해의 전조로서 진지하게 다루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보다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파트 거주·자가 소유 등 주거환경의 안정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피해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못했으며, 결국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는 성별·연령 등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경험·여성·청년·1인가구 이 네 변수가 성폭력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의하여 사실상 이 네 변수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주택이나 거주지역이 가지는 특성과는 무관하게 젊은*여성*1인가구라는 몇 가지 인구학적 특성의 중첩만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이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젊은*여성*1인가구가 성폭력 범죄피해에 갖고 있는 '집단적 두려움'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여타 범죄피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피해를 이해할 것을 요한다.

2.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방향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이 연구는 성범죄 피해 위험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네 가지 요인(스토킹 피해 경험·여성·청년·1인가구) 중에서도 특히 1인가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젊은 여성이 높은 수준의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인가구일수록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1인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성폭력 범죄의 기회로 악용하는 가해자의 등장을 알린다.

많은 1인가구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식사를 해결하고 살림하는 것과 같이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비하면 안전, 그 중에서도 거주지에서의 안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차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잦고, 상당수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며, 이로 인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거주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박준휘 외, 2017b: 12).

1인가구를 성별·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접근성이나 저렴한 임대비용만큼이나 경찰서 등과의 인접성 등 주변 환경의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 다른 성별 및 연령대의 1인가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다른 성별 및 연령대의 1인가구에 비해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의 염려하는 비율이 크게 높다(박준휘 외, 2017a: 283)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성폭력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개인적인 수준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 창문을 거의 열어두지 않고, 집을 비울 때는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니며, 창문 쪽으로 남자 옷을 걸어놓는 등의 행동이 그것이다. 20~30대 여성 1인가구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면서도 실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피해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편, 이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상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피해를 보고한 절대적인 사례수가 많지 않은 탓에 스토킹 피해 경험과 성폭력 범죄피해의 관련성을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먼저 스토킹 피해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이를 다시 성폭력 범죄피해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에 투입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상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대부분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고려하였으나,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지역 단위로 파악된 변수와 결합하는 다출처 자료 연계 및 다수준 분석을 진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점도 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이다. 향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피해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생성되어 후속 연구에서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기를, 이 연구의 결과가 스토킹 피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환기하고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 1인가구의 안전감을 효과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시작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노성훈·황의갑.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김한균·유진·한민경·이성규·최지선·윤상연·강용길·박재풍·이춘삼·김도형·박준승·조윤오·박형아. (2017a).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유진·한민경·최지선·윤상연. (2017b).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KIC 이슈페이퍼 제4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진·한민경. (2018). “1인가구의 범죄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2): 85-122.
- 최수형·조영오.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reiding, M. J., Chen J. & Black, M. C. (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2010*.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atalano, S. (2012). *Stalking Victims in the United States – Revised* (Special Report). U. S. Department of Justice.
- Catalano, S., Smith, E., Snyder, H. & Rand. M. (2009). *Female Victims of Violen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Selected Findings), U. S. Department of Justice.
- Englebrecht, C. M. & Reyns, B. W. (2011). Gender Differences in Acknowledgment of Stalking Victimization: Results From the NCVS Stalking Supplement, *Violence and Victims*, 26(5), 560-579.
- Logan, T. K., Leukerfeld, C. & Walker, B. (2000). Stalking as a Variant of Intimate Violence: Implications from a Young Adult Sample, *Violence and Victims*, 15(1): 91-111.
- Ménard, K. S. & Cox, A. K. (2016). Stalking Victimization, Labeling, and Reporting: Findings From the NCVS Stalking Victimization Supplement. *Violence Against Women*, 22(6), 671-691.

Smith, S. G., Chen, J., Basile, K. C., Gilbert, L. K., Merrick, M. T., Patel, N., Walling, M. & Jain, A. (2017).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0–2012 State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19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전미범죄피해조사 기관, <https://www.bjs.gov/index.cfm?ty=dcdetail&iid=245>, 2019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전미범죄피해조사 스토킹 관련 부가조사 안내, <https://www.bjs.gov/index.cfm?ty=tp&tid=973>, 2019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5년간 여성 대상 범죄, 월평균 2,547건 발생... 스토킹 범죄 최다’, 시사매일, 2019년 9월 12일자 보도.

‘한 해 5,000건 신고에도, 스토킹 처벌법이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7월 23일자 보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 30%에서 ‘스토킹’ 확인’, KBS, 2019년 5월 23일 보도.

“지켜보고 있다” 하루종일 괴롭혀도... 스토킹 범칙금 8만원, 매일경제, 2019년 5월 29일자 보도.

02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차혜령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차례

- 서언 : 한국에 스톱킹 처벌법이 있는가?
- 스톱킹 처벌법
 - 국회 제출 법률안 7개와 법무부 입법예고안 검토
 - 비교법 검토
 - 사이버 스톱킹 규제의 필요성
 - 피해자 보호 : 사전적 보호제도의 필요성
- 여론 : 스톱킹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

서언 : 한국에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가?

-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로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여 하는 행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행위의 불법을 모두 포함하지 못함.
- 또한 법정형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만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 스토킹 행위의 독자적 불법성을 파악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가해자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가해자 처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스토킹 관련 법률안이 8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으며, 그동안 스토킹 범죄 피해는 더 증대되는 양상이므로 20대 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됨.

스토킹 처벌법 : 국회 제출 법률안 & 법무부 입법예고안

20대 국회 법률안(대표발의/ 법안명/ 발의일자)

1.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 6. 3.
2. 김정훈 의원/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6. 9. 2.
3. 정춘숙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16. 9. 30.
4. 김삼화 의원/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 10. 13.
5. 이동섭 의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7. 7. 20.
6. 표창원 의원/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7. 8. 8.
7. 추혜선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8. 3. 14.
8. 법무부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8. 5. 10. 입법예고

스토킹 처벌법 : 국회 제출 법률안 & 법무부 입법예고안

스토킹 정의 규정 비교

법률 문언	1	2	3	4	5	6	7	8
당사자의 동의 없이/의사에 반하여	●	●	●	●	●	●	●	●
정당한 이유 없이		●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	●	●	●	●	●	●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				●		●		●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행위					●		●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			●			●		

스토킹 처벌법 : 국회 제출 법률안 & 법무부 입법예고안

스토킹 정의 규정 비교

	법률 문언	1	2	3	4	5	6	7	8
1	접근, 미행, 진로 막기	●	●	●	●	●	●	●	●
2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지켜보기, 기다리기, 통행로에 서기	●	●	●	●	●	●	●	●
3	전화·우편·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정보통신망*/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 전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을 보내는 행위/도달하게 하는 행위	●	●	●	●	●	●	●	●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	●	●	●	●	●	●	●	●
5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한 물건 주문, 서비스 신청,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스토킹 처벌법 : 국회 제출 법률안 & 법무부 입법예고안

스토킹 정의 규정 비교

	법률 문언	1	2	3	4	5	6	7	8
6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 행할 것을 요구***							●	
7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	
8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	
9	피해자 주변사람 등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거짓의 사실, 사건 또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 아님

스토킹 처벌법 : 국회 제출 법률안 & 법무부 입법예고안

스토킹 정의 규정 비교

법률 문언	1	2	3	4	5	6	7	8
피해자, 피해자와 일정 관계(가족 등)에 있는 사람이	●	●	●		●	●	●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	●	●	●		●	√	●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						●	
이와 비교할 수 있는/준하는 그 밖의 다른 행위			●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를 하는 행위

스토킹 처벌법 : 비교법 검토

- 영국
 - 1997년 괴롭힘방지법의 제정과 2012년 자유보호법에 의해 괴롭힘의 유형으로서 스토킹 행위의 예시 규정이 마련됨.
 - 예시 규정 중 특징적인 것은 특정 개인을 따라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외에 “특정 개인과 관련된 또는 관련이 있다고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또는 특정 개인으로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특정 개인의 인터넷, 이메일 또는 전자매체 수단 사용을 감시하는 행위”도 예시에 포함됨.
 - 이와 별도로 2019년 3월 스토킹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됨.
 - 스토킹 관련 행위를 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스토킹과 관련된 위험(a risk associated with stalking)”을 야기했을 때에도 “스토킹 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 발령이 가능함.

스토킹 처벌법 : 비교법 검토

- 미국 미시간주 형법
- 스토킹의 요건으로서 ‘괴롭힘’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unconsented contact)’로 규정하고, 사이버상의 스토킹을 별도 조항으로 규율함.
- Section 750.411s 전자매체를 통한 메시지 게시 금지 조항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그밖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함.
 - ‘메시지의 게시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2개 이상의 독립적 비연속적 접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을 부가하지 않음.

스토킹 처벌법 : 사이버 스토킹 규제의 필요성

“스토킹은 누군가 당신을 길거리에서 따라오거나 수풀 뒤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아요. 스토키들은 이제 몇 시간이고 온라인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고, 당신 사진 전부를 본 다음,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죠.

내가 두려운 건, 스토키가 길에서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온라인에서 지켜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 Tassy Swallow(영국 스토킹 피해자)

- 해외에서는 드론, 메신저 앱, SNS, 스마트 홈, 스마트 TV 등 기술을 사용한 스토킹 사례 증가가 보고되고 있음.

여론 :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

- 2018년부터 1년 6개월간 선고된 판결 중, 서울과 수도권에서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판결문 조사 결과, 주거 침입 후 성폭력 사건 모두 41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사건의 65% 발생, 3건 제외하고는 비면식범 무작위 범행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음(SBS & SBS Digital News Lab. 2019.9.14. 보도).
- 2019년 5월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의 경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따라가기가 아니라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일부 언론에서 스토킹으로 보도한 것과 달리 앞에서 본 의미의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의 상관관계 유무를 밝히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스토킹은 스토킹 후의 폭행,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03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경찰이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

03

경찰의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이은구(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

I. 시작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같이 모두가 알고 있는 경찰의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경찰관의 직무에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여성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은 분명 이유가 있고, 국가는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범죄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실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방법일 것이다.

경찰의 스토킹 피해방지 안전망 구축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신고 초동조치부터 수사, 사후 보호까지 스토킹범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II.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체계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이 결국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8.2월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 단계에서 경찰의 현장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1. 신고단계

'18.6월부터 112신고 코드에 '스토킹' 항목을 신설하여 활용하고 있다.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번호로 신고된 이력은 1년 동안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 출동 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은 출동 과정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현장 조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2. 현장조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장 먼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다. 현장에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상담기관과 신변보호 절차 등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친구 등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에게는 행위태양에 따라 위반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다. 행위 태양에 따라 가장 중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스토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는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는지 등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이나 '불안감 조성' 등 항목의 적용을 고려한다.

3. 사건 수사

스토킹행위 태양의 범죄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현재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등 기능에서 수사한다. 현재 스톱킹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적용 법률에 따라 담당 기능을 분장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률이 제정되면 소관 기능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표 1 스톱킹 행위유형별 처벌규정 및 수사부서

행위 유형	처벌 규정	수사
폭행(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형법 폭행 (제260조)	형사수사
협박(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형법 협박 (제283조)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 침입	형법 주거침입 (제319조)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업무방해	형법 업무방해 (제314조)	형사 사이버
공포심 or 불안감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전달	정보통신망법 공포심·불안감 유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정보통신망법 불법음란정보 유통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사이버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 전달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	여청수사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 반복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제3조 41호)	연인간 : 형사 연인 외 : 여청수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편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 등 (제3조 제40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겁을 주어 불안, 불쾌하게 함	경범죄처벌법 불안감 조성 (제3조 19호)	

4. 사후 관리 및 신변보호

스토킹 코드로 112신고 된 사건은 다음날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 - Abuse Police Officer)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콜백을 실시한다.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긴 하지만 긴박한 현장상황, 공포·두려움에 의한 경황없음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보호·지원제도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 콜백을 실시하고 있다.

콜백을 통해 경찰의 수사절차,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와 상담소 등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도 재차 전달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 전문상담 또는 피난처 요청 時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소 안내
- 신변보호 요청 時 → 경찰 신변보호조치 제도 안내
- 가해자 접근금지 필요 時 →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제도 안내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과 그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변보호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협을 인지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담당 기능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있다.

표 2 신변보호조치 유형

구분	조치	내용
시설	보호시설	장기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
	임시숙소	신변위험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에게 제공
인력	신변경호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 대상으로 한시적 경호 실시
	맞춤형 순찰	대상자의 생활패턴(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 실시
ICT기술	112등록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관리
	스마트위치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 대여
	CCTV설치	위급 상황 시 피해자 주거지의 CCTV화면 및 비상음을 상황실로 송출, 경찰 긴급 출동
지 가해자 도 피해자	경고제도	가해자 대상 위해방지조치의 일환으로 서면경고장 등을 활용한 경고
	권고제도	관련 보호·지원 제도 및 절차 안내
기타	신원정보 변경·보호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신원정보 보호

5. 스토킹 대응 TF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사건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여러 기능의 협업이 필요하면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스토킹 대응 TF」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범죄 발생 이전 단계의 안전망 구축 노력

범죄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경찰은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

1. 범죄예방진단팀 운영

가. 주요 활동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전문과·시민단체 등과 범죄취약 요인을 진단·분석하고,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있다. '18년 한 해 2만 건 이상의 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내용을 통해 범죄예방협의체를 개최(950여 회)하고 지자체와 추가 합동진단을 통해 취약요인을 개선(1,100여 건)하였다.

나.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

범죄예방시설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기존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원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주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제도) 건물주 등의 요청에 따라 진단팀이 시설을 진단하고, 해당 시설이 CPTED 요소로 이루어진 기준 이상의 범죄예방환경이 갖추어진 경우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시설물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공동체 치안활동 지속 전개

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시행

2017년부터 지역주민이 실제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을 확인한 후, 주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하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대학로 주변 등 장소의 순찰에 유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상시(온라인 순찰요청 사이트 ‘순찰신문고’) 또는 분기별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수렴하고 있는 만큼, 탄력순찰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나. 여성안심구역, 여성안심귀갓길 관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성대상 범죄로 인해 고조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안심구역·안심귀갓길 등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18년에는 전국의 여성안심구역·안심귀갓길 3,300여 개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하여 CPTED 사업을 논의, 1,500여 개소 이상의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보강하는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 (여성안심구역) 재개발지역·원룸촌 등 對여성범죄가 우려 지역 환경개선 및 순찰인력 집중 운용(’18년 약 500개소)

※ (여성안심귀갓길) 여성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정류소·역 → 주거지까지 지정, 환경개선 및 순찰인력 집중 운용(’18년 약 2,800개소)

3. 시기별·장소별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대학가 및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연이어 범죄가 발생하여, 여성 1인 가구가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련 지역의 범죄요소를 진단하고, 취약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대학가·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 이 외 ’18년 시기별·장소별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으로 올해 3·4월 공·폐가 점검, 5·6월 여성불안환경 점검, 설·추석 연휴 가정폭력 집중점검 등이 있음

대학, 지자체, 소방·한전 등과 대상·일정·방법 등을 조율하여 대학가, 여성안심구역,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환경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죄예방진단의 내용과 치안여건 등을 바탕으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재개발지구(공·폐가) 등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범죄 취약지역으로 진단한 구역은 지역경찰의 순찰경로로 지정하여 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대학 및 지자체에는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공유하여 시설개선을 촉구하고,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에는 취약지점 정보를 공유하여 합동 순찰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대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안설명회,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취약환경 개선 추진사항을 알리고,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IV. 스토킹 처벌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은 이처럼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방범을 실시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스토킹범죄의 모든 단계에서 엄정히 대응하고자 한다. 스토킹범죄 발생 시 대응체계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수정이 예상된다. 스토킹 처벌법 내용에 따라 경찰의 사건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된 긴급잠정조치와 잠정조치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규정에서 발견된 피해자 보호 공백의 문제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경찰이 현장 초동조치 및 사건 수사단계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즉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와 긴급잠정조치 규정은 범죄 발생 여부와 관련한 ‘사법작용’이 아닌 피해자의 위해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사법작용’으로 볼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규정과 같이 검사를 경유하여 판사의 결정까지 최소 1~3일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시간적 공백이 발생한다.

▲검역법 상 감염병환자격리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접종조치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행정작용’으로 규정된 것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제한 조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경찰이 위험을 즉각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처벌법’이 아닌 ‘방지법’ 쪽에 규정되는 것이 각 법령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IV. 맺는 말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아쉽지만, 관련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방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

조치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정히 제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침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범죄 이전 단계에서 예방활동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에서 스톱킹 피해로 힘들어 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법원 등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당부한다.

04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스트킹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04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I. 서론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언론이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81년 미국의 존 힝클리(J. Hinkley)가 유명 여배우 조디 포스터(J. Foster)에게 구애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R. Reagan)을 저격했던 사건이었다. 그 후 1989년 여배우 레베카 셰퍼(R. Schaeffer)가 극렬 팬이었던 로버트 존 바르도(R. Bardo)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토키라는 범죄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Meloy, 1998). 또한 2005년에는 할리우드 톱스타 멜 깁슨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잭 싱클레어(35)에 대해서 3년 실형을 선고했다(조선일보, 2005년 6월 24일, p.26). 한국에서도 1998년 텔런트 도지원 납치, 2000년 가수 김창완 폭행, 2006년 배우 이지현 납치 등의 사례들을 통해서 스토킹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은 흔히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통해서 스타로 인식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하면, 누구든지 스토킹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스토킹을 당할 수도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 TV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텔런트나 가수 같은 유명 인사들이 아닌 일반인이 대상이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즉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집착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귀찮고 신경 쓰이는 행위들, 더

나아가서는 공포와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경범죄 정도로 처리되는 범위 내에서 몇 년간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행동들 그 자체는 새로운 행동이 아니며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스토킹에 대해 구애행동이나 애정을 갈구하는 행동으로 생각했으며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이나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에 대해 너그러우며 이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한다. “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서 구애 과정에서의 스토킹을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하거나,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리는 사람을 ‘약자’로 여기며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의 통념으로 인해서 스토킹은 개인적인 일이 되었으며, 스토킹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만으로 경미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경찰이나 검찰 등 실무기관들도 사생활 침해라는 명분이나 사소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처리를 기피하고 있기에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인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등장한 또 다른 스토킹은 ‘사이버스토킹’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사이버스토킹이란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앞에서 언급한 스토킹과 비슷하지만 행동 유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행동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데이터나 장비에 대한 해킹, 제3자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거짓주장, 광범위하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II. 스토킹 실태와 그 피해

스토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실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가 1998년 4월 초 연예인 106명과 20~30대 일반여성 13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연예인의 41.5%인 44명과 일반 여성 응답자의 30%인 400명이 각각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2년 대학생 등 75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9% 내지 30.3%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은 총 240건으로 이중 93.8%인 225명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를 겪었다. 이 조사에서는 스톱킹 목적이 일방적 구애(31.7%)가 가장 많았고, 연애가 끝난 후 만남 요구(30.7%)가 뒤를 이었다.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만 15~50세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9.9%가 사이버스토킹을 당했으며 그 중 여성이 70.17%로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외국의 조사결과도 스톱킹의 만연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생동안 약 20%의 사람들이 스톱킹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pitzberg, Cupach, & Cieraro, 2010). McCreedy와 Dennis(1996)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연구하면서, 약 6%의 학생들이 스톱킹 피해경험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34%의 여학생과 17%의 남학생이 스톱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Fremouw et al., 1997). 보다 최근의 연구인 Mcnamara와 Marsil(2012)의 보고에서는 1,57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확인 스톱킹 피해경험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중 12%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의 피해는 단순히 발생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붕괴와 불안,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린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스톱킹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100명의 스톱킹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Pathe와 Mulle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는 스톱킹 가해자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3/4이 무력감을 느꼈으며 65%가 스톱킹 가해자에 대해서 보복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톱킹 행위에 의한 외상(trauma)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스톱킹 가해자의 협박이나 위협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심리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Baum et al.(1993)의 연구에 의하면 통제 상실 또는 통제에 대한 기대 상실과 관련된 사건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며, 비슷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폭력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피해자가 행동하는 데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사회적인 활동을 중단했으며 50% 이상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olahan, Moos,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0년도 조사에 따르면, 스톱킹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47.7%가 이후 전화를 받기가 두렵다고 응답하였으며 41.5%는 피해경험으로 인하여 평온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외출이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30.8%로 나타나 스톱킹 피해에 의해서 일상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호, 김은경, 황지태(2002)의 스토킹 후유증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는 대부분이 '성가심'이나 '분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집단 65%, 씬터여성과 연예인의 80% 이상이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28%, 씬터여성의 52%, 연예인의 50%가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대학생의 18%, 씬터여성의 84%, 연예인의 18%가 무력감이나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대학생과 연예인의 약 20%가, 씬터여성의 89%가 불면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과 연예인의 약 7%, 씬터여성의 52%가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범죄로서의 스토킹

법적인 측면에서 스토킹을 살펴보자면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행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 상대방을 한없이 기다리는 행위와 같은 특별히 폭력성을 지니지 않는 행위들도 스토킹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외견적인 폭력행위가 없고 스토킹의 대부분의 행동들이 애정행위와 불법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스토킹 방지 규정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스토킹이라고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공포나 불안,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해를 야기를 의도의 형태로 된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경우 기소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고의성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Sheridan & Davies, 2001). 또한 미국의 여러 주의 스토킹 방지법 중에서 그 규정의 추상성과 모호한 의미의 용어 사용 때문에 여러 차례의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이진호, 2004).

이처럼 스토킹은 대중매체에서의 언급, 일반인의 인식, 법적인 측면에서 오해나 논쟁의 소지가 크며,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Sheridan, Gillett, Davies(1997)는 몇 가지 이유에서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스토킹 가해자들의 행위들 중 많은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악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제정된 외국의 법률들은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상식에 기초하여 스토킹에 대한 개념을 지니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강한 구애의 행위가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행위가 폭력 등으로 비화되어 표면 위로 나타날 때까지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와 경찰, 피해자와 법원이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스토킹 문제의 핵심이다(한종욱, 1999: 117).

IV. 스토킹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스토킹(Stalking)과 스토킹(Stalker)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나 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변태'라든가 '치한' 등으로 불리던 사람들까지 현재는 스토킹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관련법마다 서로 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이시형 등(1998)은 스토킹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연애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애에 접근해서 싫은 오해나 온갖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는 행위'라고 언급하였다. 조희진(1999)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조국(2000)은 '각종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 의사에 반해 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안겨주는 행위'라고 하였다. 김학태(2011: 182)는 스토킹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창한(1998: 9)과 이진호 외(2002: 33) 및 이정호(2008: 124)는 스토킹을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편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기,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행위 등)이나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박철현 등(2000)의 연구에서는 스토킹이라는 것을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표명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선물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잠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Meloy(1995)는 스토킹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첫째, 어떤 사람에 대한 일방적 행동 강요의 양상(품행의 추이), 둘째, 행동 양상으로 입증되는 암묵적인 혹은 노골적인 협박, 셋째, 행동 강요의 결과로서 위협을 당한 사람은 어느 정도 두려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으로 스토킹은 어떤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적이고 악의에 찬 반복적 추적과 괴롭힘으로 정의하면서 임상 병리적으로 스토커의 행위를 관계망상(obsessional following)으로 진단하였다.

V.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국내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진호 등(2002)의 연구에서 넓은 의미에서든, 엄격한 의미에서든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와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응답자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 혹은 스토킹으로 간주될만한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방적인 구애 행위'와 '원치 않는 전화·편지·선물 공세'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만나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와 '헤어지자는 요구를 계속 거절하며 뒤쫓는 행위'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변을 맴돌면서 엿담·추적하는 행위'와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물건을 보내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압도적인 다수가 스토킹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이진호 등, 2002)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남성들 중 79.9%가 단순폭행과 성폭행의 중간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며, 여성들 중 82.5%가 단순폭행과 성폭행의 중간 정도의 범죄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남성 중 10.8%는 단순폭행과 같거나 그보다 경미하다고 생각한 반면, 여성 중 단지 1.9%만이 단순폭행과 같거나 그보다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성폭행과 같거나 그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남성에서는 9.2%, 여성에서는 15.4%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킹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스토킹에의 하위 유형 분류

스토킹의 개념규정이 애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에 대한 유형별 분류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Dietz와 동료들은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밀접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Geberth는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적인 정신이상 유무를 기준으로 정신병자 스토킹 행위자와 정신병적 성격장애 행위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Sheridan과 Boon 등은 상대방과 과거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지로 분류하여 전배우자 스토킹, 애정추구형 스토킹, 매우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 덜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 가학적 스토킹으로 분류하고 있다(이건호, 2004, p. 209-222). 전배우자 스토킹은 스토킹 행위자가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증오 등의 감정과 관련이 있어서, 행위자의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의 감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애정추구형 스토킹은 다른 스토킹 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고,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선물공세인 경우가 많다.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 행위자는 인격 장애나 분열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행위형태는 일관성이 없고 끊임없는 전화나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며 그 내용이 성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는 상대방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덜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은 상대방과 자신 사이에 어떤 이상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망상은 지니고 있다. 이 행위자의 행위는 직접적인 위험성은 없는 것이 보통이며 대체로 상대방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가학적 스토킹은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있어 약탈대상과 같이 인식된다고 한다. 행위자들은 피해자의 행복이나 안정 등을 해하려 하는데, 피해자들은 왜 자신이 스토킹의 대상으로 선정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나 현재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Ⅶ. 스토킹 통념(Stalking Myth)

‘강간통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Brownmiller(1975)나 Burt(1980)같은 연구자들이 강간통념(흔히 강간신화라고도 함, rape myth)을 연구하면서 부터이다. 통념은 도식(Schema)의 한 종류로 우리가 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강간통념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인습적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는 태도와 신념들’로 정의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따라서 강간통념은 강간과 강간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한 편파 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혹은 잘못된 신념을 말하는데(Burt, 1980), 이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기재로서 이용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여러 연구자들은 스토킹과 연관된 통념을 제시하면서 스토킹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실에서의 스토킹은 남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스토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이러한 성차에 따른 인식 차이는 이전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개인이 법정에서 스토킹을 인식할 때, 성별에 따라서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Sinclair, 2012), 이러한 결과는 강간에 대해서 판단하는 개인의 통념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Burt, 1980).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인식이나 통념들이 특정한 스토킹 행동에 대해서 범죄로 판단할지 말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Sinclair(2012)는 연구대상에게 스토킹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연구대상이 가진 스토킹 통념이 스토킹과 연관된 행동들을 스토킹으로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스토킹 시나리오를 보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21개의 스토킹과 관련한 태도 문항에 대해 점수를 주었다(e.g., ‘사랑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결과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스토킹 통념에 대해 너그러운 판단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장일 때 스토킹 통념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을 경우 부정적인 판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Kamphuis 등(2005)도 위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스토킹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스토킹과 관련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경찰관과 스토킹에 대해서 역기능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태도가 스토킹 삽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12개의 스토킹 삽화에 대해서 삽화 행동의 심각성 정도, 대상과의 관계(낯선 사람, 지인, 친한 사람), 그리고 34개의 스토킹 통념 문항(Mckeon, Mullen, & Ogloff, unpublished)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토킹에 대해 역기능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스토킹 삽화들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스토킹

통념을 통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토킹 통념이나 강간 통념을 가진 사람들은 ‘가해자’일 경우나 개인적인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대상을 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폭력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구애 행동의 하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들은 문화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있는데, 특히 스토킹의 경우 거부하는 여성에 대해 남자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낭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Lee, 1998). 그리고 집요한 구애 요구가 결국에 성공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용납되기도 한다(Lowney & Best, 1995). 이러한 생각은 스토킹 통념의 수용과도 연관이 되며 스토킹에 연관된 많은 행동들을 보통의 구애 행동이라고 여기는 근거가 된다.

비슷한 연구로 Cupach와 Spitzberg(2000)은 거절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토킹 가해자들은 사랑에 대한 문화적 믿음(사랑에서 ‘아니오’는 결국 ‘예’이다)과 같은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문화가 자신들의 집요함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고 믿으며 상대방의 거절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구애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Lowney & Best, 1995).

Dunlap 등(2015)는 이러한 스토킹 통념들이 어떠한 심리적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비난, 행동 미화, 사건 축소화의 3가지 요인으로 스토킹 통념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정인(2015)의 연구에서는 책임귀인, 사건 축소화, 애정사건화, 피해자 비난의 4가지 요인으로 스토킹 통념을 구분하였다. 다른 성범죄인 강간통념의 경우 이석재(1999)가 개발한 척도에서는 하위 요인들이 여성의 행동에 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에 대한 통념 간 유사성을 비교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회피, 여성에 대한 이중기준이나 태도가 서로 비슷한 하위 요인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행위에 대한 축소화가 스토킹에서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Ⅷ. 나라별 법률적 정의

스토킹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각국의 입법과정에서도 차이를 유발하였다. 입법의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먼저 스토킹 방지법(Anti-Stalking Laws)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Stalking Legislation : California Penal Code 646.9. Stalking) 스토킹 범죄란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반복적으로 치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Meloy, 1998:2-3),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법령은 특정 행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의도(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존재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캘리포니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이 미국의 다른 주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준적인 법안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입법의 모습은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Wallace와 Kelty(1995)는 스토킹에 대한 기술을 다음의 정의로 요약했다. 즉 '합리적인 사람이 그, 그녀, 그 또는 그녀의 직접 관련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특정인에게 향해진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이 1997년에 제정되어 현재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다(이건호, 2004). 이 법은 스토킹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 규율되는 행위는 단순히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amount to harassment)'로만 규정하고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실, 2000). 여기서 고의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개인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행위 유형은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독일의 경우는 2007년 형법을 개정하여 형법 제238조(Nachstellung: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죄)를 신설했는데, 이에 따르면 스토키 및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권한 없이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는 사람(1.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을 방문하는 경우 2.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의사전달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오용하여 상품의 주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4.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와 절친한 사람에게 신체의 완강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 기타 피해자의 생활현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학태, 2011: 191-192).

오스트레일리아도 주에 따라 다양한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Criminal Code Act 1899, s359A Unlawful Stalking). 이러한 법들은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도입되었는데, 퀸스랜드 주를 시작으로 뉴 사우스웨일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등의 여러 주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하였다. 이들 스토킹 방지법들은 주로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을 그 모델로 삼은 것들이며, 따라서 그 구성요건, 법률적용 및 제재수단 등이 미국의 주법률들과 유사하다(이건호 등, 2002). 하지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은 미국의 법률과 다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소유물에 들어가거나 방해(간섭)하고, 모욕적인(화나게 하는) 물건을 주고, 감시를 하고, '합리적으로 타인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자극할 것이 예상되는 방법으로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으로 유죄가 된다고 규정한다. 단 이것은 단지 그들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었다고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

일본의 경우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スト-カ-行爲等の規制等に關する法律) 제2조에 의하면 "이 법률에서 '따라다니기 등'이란 특정인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적인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친족 기타당해 특정인과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행위 중의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의 내용은 1.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방해, 주거·근무처·학교 기타 보통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는 행위 2.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케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3. 면회, 교제, 기타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현저하게 거칠고 품위가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스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행위 6. 오물, 동물의 사체, 기타 현저하게 불쾌 내지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7.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8.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행위, 이렇게 8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동일인에 대하여 따라다니기 등(전항 1호에서 4호까지 열거된 행위에 관해서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또는 명예가 손상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하게 방해되는 불안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함)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영성, 2002: 814-815).

IX. 국내법에서의 개념화 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스토킹을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2003년의 '스토킹 방지법안'에서는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싫어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추적하는 것
2.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
3. 특정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2005년의 '스토킹 등 대인공포 유발행위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특정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시도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불안·공포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라 말하고 있다. 제2조 각 호의 행위는 1.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함에도 계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이나 사진, 그림 또는 물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상대방이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묵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과 표시를 반복하는 행위 4.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함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처·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기 5. 상대방의 사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사진, 그림 또는 물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또는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신체적 모욕감을 주거나,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X. 결어

스토킹에 대한 정의, 세계 각국의 법률, 여러 논문 등을 볼 때 특정 행동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방적인 행동, 둘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것, 셋째,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느끼는 것을 뽑을 수 있으며(이건호 등, 2002), 그 외에 고려해 볼만한 행동은 원하지 않는 물품의 제공이나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 획득 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결과가 다른 범죄보다 더 위협적이거나 치명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중매체에서 스토킹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통 이야깃거리가 되기 쉬우며, 때로는 급격하게 치명적인 결과로 발전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자극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범죄행위들과는 다르게 스토킹은 법적인 규제를 쉽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적인 행동과 스토킹을 구별하기 쉽지 않으며, 일상적인 행동들의 과정이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그 폭력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스토킹은 기존의 법적인 형태의 초점을 벗어나는 사각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스토킹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이다. 즉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적용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스토킹을 정의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만 한다. 즉, 스토킹을 너무 넓게 정의하는 경우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범죄도 스토킹에 포함시키게 되어 법률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형사사법 체계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그물망을 넓히는(net-widening)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진수명 2001, p. 17)이다. 국내에서 스토킹방지법을 입법하기 위하여서는 최근 발생한 국내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스토킹에 대하여서도 그 정의를 새롭게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김은경. (2003).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91-140.
- 김정인. (2008). 스토킹과 그 가해자에 관한 소고-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9(단일·호), 159-195.
-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이건호. (2004).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91-244.
- 이시형·이세용·김형주·신영철·이소희. (1998). 현대사회와 스토킹. *현대사회와 스토킹 연구보고서*.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창한. (2009). 스토킹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1), 93-119.
- 이혜선·이수정·김범준. (2006).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363-396.
- 조국. (2000). 스토킹에 관한 형법적 대책. *인권과 정의*, 287, 46-56.
- 조희진. (1999).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관한 법률적 측면. *시민과 변호사*, 66.
- 진수명. (2001).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형사정책연구소식*, 64, 16-26.
- 한종욱. (1999). “스토킹”. *수사연구*, 94.
- Cupach, W. R. & Spitzberg, B. H. (2000).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Incidence, perceived severity, and coping. *Violence and Victims*, 15(4), 357-372.
- Davis, J. A.(Ed.). (2001). *Stalking crimes and victim protection: Prevention, intervention, threat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CRC Press.
- Dietz, P. E., Matthews, D. B., Martell, D. A., Stewart, T. M., Hrouda, D. R. & Warren, J. (1991). Threatening and otherwise inappropriate letters to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6(5), 1445-1468.
- Dunlap, E. E., Lynch, K. R., Jewell, J. A., Wasarhaley, N. E. & Golding, J. M. (2015). Participant gender, stalking myth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ing in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Psychology, Crime & Law*, 21(3), 234-253.

- Geberth, V. J. (1992). Stalkers. *Law and order*, 10, 1-6.
- Holmes, R. M. (1993). Stalking in America: Types and methods of criminal stalker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9(4), 317-327.
- Lee, R. K. (1997). Romantic and electronic stalking in a college context. *Wm. & Mary J. Women & L.*, 4, 373.
- Lowney, K. S. (1995). Stalking strangers and lovers: Changing media typifications of a new crime problem. *Images of issues: Typifying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 Meloy, J. R. (2001).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Academic Press.
- Meloy, J. R. (2007). A clinical investigation of the obsessional follower. *Explorations in criminal psychopathology: Clinical syndromes with forensic implications*, 133.
- Sheridan, L. & Davies, G. M. (2001). What is stalking? The match between legislation and public percepti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6(1), 3-17.
- Sheridan, L., Gillett, R. & Davies, G. (2000). 'Stalking'-Seeking the victim's perspective. *Psychology, Crime and Law*, 6(4), 267-280.
- Sinclair, H. C. (2012). Stalking myth-attributions: Examining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les on attributions in unwanted pursuit scenarios. *Sex Roles*, 66(5-6), 378-391.

05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해외 스토킹 피해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의 미래과제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

05

해외 스토킹 피해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의 미래과제

윤선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스토킹 범죄는 2,202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에 스토킹 범죄가 약 81%(300건→5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상해나 강간,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 스토킹은 2012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괴롭힘'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벌은 벌금 1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 역시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발전된 이후에나 범죄피해자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스토킹 범죄가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사제재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대응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²⁾

한민경 박사, 차혜령 변호사 두 분 발제자의 발표를 통해 국내외 스토킹 피해 관련 연구 및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마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본 토론자는 스토킹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의 스토킹 피해방지 정책 및 대응체제를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5년간 여성대상범죄, 월평균 2547건 발생...스토킹 범죄 최다.' 시사매일, 2019년 9월 12일자 보도.

2) 홍서아, 송병호(2016). 스토킹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및 보호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2(2), 195~230.

I.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및 담당 정부기관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0개 주(State), 워싱턴 D.C., 5개의 미국령 행정 관할, 그리고 연방법 차원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하였다. 각 주의 스토킹금지 관련 법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스토킹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이 제정되고 1995년 법무부내 여성폭력 담당 기관(Th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OVW)이 설치되면서,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기관 및 제도 등의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었다. OVW는 시설, 단체, 정부기관 등에 자금(funding)을 지원하여 여성폭력 대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들을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³⁾

II. 스토킹 관련 지원책

1. 전문가 훈련(Training)

스토킹 예방 및 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professionals)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대상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을 반영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OVW는 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시설, 단체, 정부기관 등이 경찰, 상담사, 판사, 보호감찰관, 정신건강전문가 등을 훈련시켜 스토킹 행위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 전문 정보 제공(Technical Assistance)

스토킹자원센터(Stalking Resource Center: SRC→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and Resource Center: SPARC)는 OVW 자금 지원을 받아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센터는 각 전문가 대상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스토킹 정의·실태·행위, 성폭력 등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피해 후유증,

3) <https://www.justice.gov/ovw>.

안전계획,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토킹 사건 기록표(Stalking Incident Log)를 이용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관련 행위들을 모두 기록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웹 기반 스토킹·괴롭힘 평가 및 위험성 프로파일(Stalking and Harassment Assessment and Risk Profile: SHARP)을 개발하여 스토킹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위험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

3. 커뮤니티 교육 및 홍보(Community Education/Public Awareness)

시민들에게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OVW는 스토킹인식의 달(National Stalking Awareness Month: NSAM)인 매해 1월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응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커뮤니티에서 스토킹을 포함한 여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내 스토킹 관련 정책 등을 만들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지역사회 연계 협조(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CCR)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나 기관 단독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 상담사, 판사, 보호감찰관, 정신건강전문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 간 연계 및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OVW 지원금을 받는 모든 시설, 단체, 정부기관 등은 CCR 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해 연 2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OVW는 CCR를 통해 관련 기관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스토킹 피해의 조기 파악 및 개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역할분담 및 상호 지원 방안에 대한 협업 매뉴얼 등을 만들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스토킹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스토킹 행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책 강구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OVW의 스토킹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위한 4가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훈련, 전문 정보 제공, 커뮤니티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협조. 다양한 전문직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훈련을 통한

4) <https://www.stalkingawareness.org>.

지원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전문직 간 협력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스토킹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이를 근거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발행일 2019년 11월 7일
발행인 박봉정숙
발행처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전화 02-6363-8432, 8433 팩스 02-6363-8494
홈페이지 <https://www.stop.or.kr>
등록번호 여성인권-자료집-2019-8
디자인·인쇄 디자인인 02-783-858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